



# 베트남 세법 안내 2024



# 목차

조세 (Taxation)	
일반사항 (General overview)	7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	8
• 세율 (Tax rates)	
• 세제혜택 (Tax incentives)	
• 과세소득 산정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 손금불산입항목 (Non-deductible expenses)	
• 결손금 (Losses)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 이익배당금의 송금 (Profit remittance)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12
• 특수관계자 정의 (Related party definition)	
• 정상가격 결정방법 (TP methodologies)	
• 정상가격 범위 축소 (Tightening of the acceptable arm's length range)	
• 비교대상회사 선정 (Selection of comparables)	
• 이전가격 신고서식 (TP declaration Forms)	
• 이전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 이전가격 조사 (TP audits)	
• 총 이자비용 손금인정 한도 30% (30% of EBITDA cap on total interest expenses)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관련 움직임	15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17
•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 배당 (Dividends)	
• 이자 (Interest)	
• 로열티 (Royalties)	
• FCT 납부방식 (FCT payment methods)	
• 직접법 하 FCT 적용 세율 (FCT Rates under Direct method)	
• 외국 전자 상거래 기업 과세 (Taxing foreign e-commerce businesses)	
•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지분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2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23
•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 (Goods or Services where VAT declaration and payment are not required)</li> <li>● 면세 재화 및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li> <li>● 세율 (Tax rates)</li> <li>● 수출된 재화 및 용역 (Exported goods and services)</li> <li>● 부가세 산출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li> <li>● 할인 및 판매촉진 (Discounts and promotions)</li> <li>● 자가사용 재화 및 용역 (Goods and Services for internal consumption)</li> <li>●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li> <li>● 부가세 환급 (VAT Refunds)</li> </ul>	
세금계산서 발급 (Invoicing)	29
재산세 (Property Taxes)	30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SST")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가격 (Taxable price)</li> <li>● 세액공제 (Tax credits)</li> <li>● 세율 (Tax rates)</li> </ul>	
환경세 및 친환경 인센티브 (Green Taxes and Green Incentives Landscape)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세 (Green Taxes)</li> <li>● 친환경 인센티브 (Green Incentives)</li> </ul>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관세 (Import duties)</li> <li>● 관세액 산정 (Customs valuation)</li> <li>● 면세 (Exemptions)</li> <li>● 환급 (Refunds)</li> <li>● 수출관세 (Export duties)</li> <li>● 수입 시 부과 가능한 기타 세금 (Other taxes potentially imposed on imports)</li> <li>● 관세조사 (Customs Audits)</li> </ul>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국 (Tax Residency)</li> <li>● 과세 연도 (Tax Year)</li> <li>●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li> <li>● 근로소득 이외의 개인소득 (Non-employment Income)</li> <li>● 비과세 개인소득 (Non Taxable Income)</li> <li>●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li> <li>● 소득공제 (Tax Deductions)</li> <li>● 세율 (PIT Rates)</li> <li>●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li> </ul>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44
기타세금 (Other Taxes)	45
세무조사, 불복 및 소송(Tax Audits, Appeals and Litigation)	46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47
별첨 1 – 조세조약 (Appendix I - Double Taxation Agreements)	51
PwC Vietnam 이 제공 중인 서비스 (PwC Services in Vietnam)	54
PwC Vietnam Korean Business Services 담당자 연락처 안내 (KBS Contacts)	56
PwC Vietnam 담당자 연락처 안내 (Contacts)	57

# A summary of Vietnam taxation

당 세법 정보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세법 법령 및 실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 정보는 베트남 세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업 및 개인마다 다른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과세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조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 조세 (Taxation)

## 일반사항 (General Overview)

대부분의 베트남 내 경영활동 및 투자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법인세
- 외국인계약자세 등 다양한 원천징수세
- 지분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 수입관세
- 베트남인 및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 조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특별소비세
- 천연자원세
- 재산세
- 수출관세
- 환경보호세
- 토지임차료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CIT")

## 세율 (Tax rates)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한 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일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25%부터 50%**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32%에서 50%**까지의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Tax incentives)

세제혜택은 법으로 정하여진 투자장려활동, 투자장려지역 및 투자규모를 만족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특정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됩니다.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 확장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 인수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된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베트남 정부에 의하여 투자가 장려되는 활동에는 교육, 건강보건, 스포츠/문화, 첨단기술, 환경보호, 과학적 연구 및 기술개발, 기반시설 개발, 농수산물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재생에너지가 포함됩니다.
  - 우선적인 개발이 장려되는 산업재 (첨단기술, 의류, 섬유, 신발, 전자부품, 자동차 조립 및 기계 등의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제품 포함)를 제조하는 제조업 기업의 신규 투자 또는 확장 프로젝트의 경우 제품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장려되는 지역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제지구 및 첨단기술지구, 특정 산업단지 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정된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의 제조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세제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총투자자본이 **6 조 VND** 이상이며, 설립허가 이후 **3년** 내에 자본금이 완납된 프로젝트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i.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연 매출액 **10 조 VND** 달성, 또는
    - ii. 영업 개시 후 **4년** 차까지 최소 고용인원 **3,000명** 달성
  - ✓ 총투자자본이 **12 조 VND** 이상이며, 설립허가 이후 **5년** 내에 자본금이 완납된 프로젝트로서 관련 법률들에 따라 장려기술로 등록된 기술을 이용한 경우

특별 투자혜택은 투자법에 명시된 R&D 및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됩니다. 법인세 혜택은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유리한 패키지는 **37년** 동안 **5%** 우대세율, **6년** 동안 세금 면제 및 이후 **13년** 동안 법인세 **50%** 감면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토지 및 수도세 면제/감면혜택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대상 활동에서 최초 수익(매출)이 창출된 이후, **15년간** 우대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와, 수익 창출 이후 **10년간** 우대세율 **17%**가 적용되는 **2가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우대세율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대세율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표준 법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특정한 경우 프로젝트 기간 전체에 걸쳐 **1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의 사회적 사업 업종(예컨대, 교육사업, 의료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혜세율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는 조세면제와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제혜택 대상 활동으로부터 최초로 과세소득 (other income 은 제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일정 기간동안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고, 해당기간 경과 후에는 적용 세율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면제/감면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가 세제혜택 대상 활동에서 최초 수익(매출)이 창출된 이후 3년 이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익년도인 4번째 연도부터는 강제적으로 조세면제/감면이 개시됩니다. 조세 면제와 감면에 해당하는 조건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 투자혜택이 부여된 R&D 및 투자 프로젝트는 더 오랜 기간의 세금 면제 및 감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제조, 건설 및 운송사업에서 일정 인원 이상의 다수의 여성직원 또는 소수민족을 채용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낮은 법인세율을 포함한 특정의 세제혜택들이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 부여됩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충족 필요)

투자 장려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타소득(other income)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는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단, 폐기/처분과 같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허용). 참고로, 세제혜택의 가용성/효익은 최근에 베트남에서 승인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 과세소득 산정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소득 = 총수익(국내, 해외 원천 불문) - 손금인정되는 비용 + 기타 소득

납세의무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소명하는 조정사항들을 포함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손금불산입항목 (Non-deductible expenses)

비용 항목 중 수익 창출과 연관되고 필수 증빙서류 (청구금액이 2천만 VND 이상인 거래시 은행 계좌이체증명서 포함)가 뒷받침되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비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개별노동계약서, 단체노사협약서, 혹은 사규에 기술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직원 보수지급 관련 비용
- 월평균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의 가족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 포함). 의무적이지 않은 의료 및 상해 보험(Non-compulsory insurance)도 직원 복리후생비로 간주됨
- 종업원을 위한 자발적인 (법률에 정한 의무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한) 연금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금으로 종업원당 월간 3백만 VND 를 초과하는 금액

- 적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적용된 R&D 관련 총당금
- 노동법상 규정을 초과하여 퇴직급여총당금을 설정하였거나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 해외기업의 본사에 의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에 배부된 간접비용 중 규정된 매출액 기준 배부방식 하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법정 자본금의 미납입액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 베트남중앙은행 고시이자율의 1.5 배를 초과하는 개인에 대한 이자
- EBITDA 의 30%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이자.
-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총당금, 유가증권평가손, 제품보증비용, 건설공사 총당금으로서 법규정을 위배하여 적용한 경우
- 외화표시부채에서 기인하지 않은 외화환산손실
- 교육, 의료보건, 자연재해, 빈민자선사업용 주택건설, 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금
- 행정벌과금, 과태료, 지연납부이자
-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용역비

보험사, 증권사, 또는 복권 사업자 등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손금이 인정되는 R&D 펀드 설정이 허용되며, 연간 세전이익의 10% 까지 총당할 수 있습니다. 동 R&D 총당금은 지정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비용 집행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결손금 (Losses)

납세의무자는 세무상 결손금액을 향후 최장 5 개년 동안 완전하고 연속적으로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익)은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손실)과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부문간 통산 허용). 부동산 및 투자 프로젝트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도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 가능합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결납세의무나 동일 기업그룹사 내 손실의 공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기업들은 추정에 따라 분기별 중간예납을 납부하면 됩니다. 4개 분기의 예납액은 최종 법인세 신고납부액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법인세 신고는 연간으로 수행됩니다. 연간 법인세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세번째 달의 말일까지 신고/제출되어야 하며, 법인세 부채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표준 과세연도는 역년(1~12 월)입니다. 만약 회사가 역년과 다른 과세연도(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익배당금의 송금 (Profit remittance)

외국 투자자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또는 베트남 내 투자의 종료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모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피투자회사가 이월결손금 상태인 경우 이익배당은 불가합니다.

외국 투자자 또는 피투자회사는 이익배당금의 송금 예정일로부터 7 영업일 이전까지 과세당국에 송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Decree 132/2020/ND-CP (이하 “Decree 132”)는 베트남의 이전 가격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베트남의 이전가격 규정들은 베트남 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 특수관계자 정의 (Related party definition)

Decree 132 에서 특수관계자로 정의되는 지분 보유 기준은 25%입니다. 기업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 개인도 특수관계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 정상가격 결정방법 (TP methodologies)

정상가격 결정방법에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and Tax Administrations)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법(PSM), 거래순이익률방법(CPM or TNMM)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범위는 35 번째 백분위수부터 75 번째 백분위수까지입니다.

## 비교가능대상 선정 (Selection of comparables)

납세자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내 시장에서 비교가능대상을 우선적으로 찾고 이 후에 유사한 산업 환경 및 경제 발전도를 갖춘 지역 내 타 국가로 확장할 것이 요구됩니다.

## 이전가격 신고서식 (TP declaration forms)

이전가격 신고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내용, 사용된 정상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연도별 신고를 포함하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상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확인 (또는 자발적인 조정 수행)을 요구합니다. Decree 132 은 회사가 적용한 이전가격 방식이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가격 관련 손익의 하향조정 (Downward adjustment)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Decree 132 은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 3 자 거래에 대한 손익의 구분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이전가격 신고서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납세자는 Local File 과 Master File 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신고서식 작성도 요구됩니다. 이는 이전가격 신고서식이 과세당국에 제출되기 전에 이러한 Local File 및 Master File 관련 정보가 준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전가격 신고서식은 연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Decree 132 은 납세자가 Decree 132 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경우,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조정 목적으로 자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세율이 동일하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베트남 내 기업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가격 신고서식에 해당 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 (TP documentation)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매년마다 베트남어로 작성된 TP documentation 을 작성/구비하여야 합니다. Decree 132 은 다국적 기업의 영업에 대한 과세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3 단계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Master file, Local file, Country-by-Country Report(CbCR) 입니다. 이러한 3 단계의 이전가격 문서화는 원칙적으로 연간 법인세신고 제출시점 이전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최상위 모회사가 베트남 내 거주자이고 한 회계연도 동안 전세계 연결기준 매출액이 18 조 VND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베트남 내 최상위 모회사가 CbCR 의 작성 및 제출 책임이 있습니다. Decree 132 에 따라 CbCR 은 해당 과세 연도 종료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세무 당국에 제출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최상위 모회사가 베트남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정보자동교환(AEOI) 절차를 통해 베트남 세무 당국이 해당 CbCR 에 접근 가능할 경우, 베트남에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 베트남에서 CbCR 및 관련 통지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Decree 132 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TPD) 작성이 면제됩니다.

- 과세기간 중 매출액이 500 억 VND 미만인면서 특수관계자 거래의 총 금액이 300 억 VND 미만; 또는
- APA (Advance pricing agreements,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협상이 타결되고 연간 APA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 또는
- 매출이 2,000 억 VND 미만인면서,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업종에 따라 특정한 이익률(EBIT/매출) 조건을 달성하는 납세자 (유통업 5%, 제조업 10%, 임가공업 15%); 또는
-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세율이 동일하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베트남 내 기업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 이전가격 조사 (TP audits)

최근 몇년 간 이전가격 조사 실시 건수에 있어 뚜렷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교한 조사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이익률 자주 제기하는 항목은 이전가격 문서화에서 인용된 비교대상회사들의 타당성, 그룹 내 용역비 공제 가능성, 수년간 부문 또는 회사 전체의 이윤 변동입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들은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므로 사업상황에 대한 설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세무 조사에 납세자의 이전가격 포지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 총 이자 비용에 적용되는 EBITDA 30%의 한도 (30% of EBITDA cap on total interest expenses)

Decree 132 에 따라, 이자비용의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가 EBITDA (이자 법인세 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의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동 한도는 순이자비용 (즉, 한도 비교 전, 이자수익과 상계된 이자비용)에 적용됩니다.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5 년까지 차년도들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자금 조달의 경우는 동 한도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며 예시로, 공적개발원조 (ODA) 자금,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우대 대출, 국가 프로그램 및 국가 사회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대출이 있습니다.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

Decree 126/2020/ND-CP 및 Circular 45/2021/TT-BTC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당국들과 일방의(unilateral), 쌍방의(bilateral), 다자간의(multilateral)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APA 신청을 위해 제안된 거래는 특정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 분쟁/조세 불복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PA 신청 절차는 사전 제출 (선택 사항), 정식 제출, 평가, 논의 및 협상, 종료의 5단계로 구성됩니다. APA 평가 단계에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 및 서류의 완전성, 정확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세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APA 유효기간은 3년이며, 납세자가 베트남에서 영업한 운영 연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관련 움직임

##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

2022년 2월 9일, 베트남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 (“다자협약” 또는 “MLI”)에 서명하여, 협약에 가입한 99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자협약은 다음과 같은 로드맵으로 시행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금; 또한
- 202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

이는 베트남이 2017년 BEPS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의 100 번째 회원국이 된 이후 베트남에서 BEPS 실행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75 개의 베트남 조세조약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베트남에서 조세조약에 대한 잠재적 변화와 투자 및 거래 구성 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 필라 2 (Pillar 2)

OECD에서 도입한 BEPS 필라2에 따라,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관할권별로 최소한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정책에 대한 결의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결정문에는 베트남이 적격국내최저한세 (“QDMTT”) 및 소득산입규칙 (“IIR”)을 도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가지 규칙 모두 필라2의 글로벌 시행의 맥락에서 베트남의 세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격국내최저한세 규칙은 해외 인바운드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득산입규칙은 베트남 아웃바운드 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DMTT	IIR
적용대상 납세자	외국의 최종모회사가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의 베트남 자회사	회계연도 중 직간접적으로 저과세 자회사를 소유하며, 검토 대상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베트남 최종모회사 또는 베트남에 소재한 중간모회사 또는 부분소유중간모회사
시행내용	적용대상 납세자는 추가 세율 (15%에서 베트남에 소재한 모든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을 뺀 효율)에 매 회계연도의 초과이익을 곱해서 나오는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GloBE”) 소득, 초과이익 및 실효세율의 산정방법은 OECD의 GloBE 규칙에 따라 손익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기업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적용대상 납세자는 회계연도에 저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서 할당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OECD의 글로벌 세원잠식방지 (“GloBE”)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배분되는 법인세와는 달리 추가세는 중앙정부 예산에 납부됩니다.

## 세금 신고 의무:

- 적용대상 납세자는 **GloBE** 정보 신고, 보충 법인세 신고 및 다른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설명 (이는 **OECD** 지침에 언급된 중요 경쟁 왜곡 ("**material competitive distortion**")에 대한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QDMTT**: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IIR**: 적용대상 첫해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 이후 회계연도에는 **15개월** 이내
- 납세기한은 세금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 세이프하버 및 페널티 면제:

결의문은 **OECD**의 **GloBE** 규칙과 동일한 전환 국가별 보고서 ("**CbCR**") 세이프하버 규칙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전환기간 동안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QDMTT** 및 **IIR** 규칙 하 관할권에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다국적 기업그룹이 한 회계연도에 적격 **CbCR** 상 해당 관할권에서 창출한 총 매출이 **1,000만 유로** 미만이며 세전손익이 **100만 유로** 미만이거나 적자상태인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다국적 기업그룹이 해당 회계연도의 특정률 이상의 간이 실효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특정율은 **2023~2024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5%**; **2025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6%**; **2026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17%**입니다.
- 해당 관할권에서 다국적 기업그룹의 세전손익이 **GloBE** 규칙 하 산정된 **CbCR**에 따라 해당 관할권에 주재하는 구성기업의 실질 기반 적용제외 소득 이하인 경우.
- 전환 페널티 면제: 전환기간 동안 세금신고와 관련된 행정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결의문에는 연체이자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FCT 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VAT)와 법인세 (CIT) 의 조합 또는 외국인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PIT)로 구성됩니다.

FCT 의 지급 대상은 이자비용, 로열티비용, 서비스비용, 리스료/임차료, 보험료, 운송서비스비용, 증권의 매매로부터의 수익,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재화 또는 베트남 내에서 유관 용역이 제공된 재화로부터의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해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의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의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유통 방식의 경우 FCT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업체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가격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베트남 기업을 고용/위임하여 베트남에서 재화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재화의 공급은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즉, 재화가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한 이후 재화와 관련된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베트남 내 유관 용역 수행이 없어야 함). 또한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용역, 베트남 외부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기타 용역 (예: 수리, 교육, 광고, 판촉 등) 의 경우도 역시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 (Dividends)

외국법인주주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에 따른 송금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이자 (Interest)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에 대하여 5%의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특정 외국 정부나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역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관련 조세조약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면세채권 제외)과 해외법인에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이자지급도 5%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 사용료 (Royalties)

사용권,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포함)의 이전,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전 등에 따라 해외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FCT가 적용됩니다.

## FCT 납부방식 (FCT payment methods)

외국인계약자는 FCT 납부방식으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 – 공제법, 직접법, 혼합법 -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 공제법 (Deduction Method)

공제법 적용시 외국인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 하고, 베트남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매입부가세 공제 가능). 외국인 계약자들은 다음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임
-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182 일 초과 소요됨
- 베트남 회계시스템(VAS)을 채택하고 준수하며, 납세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Tax Code 가 발급됨

베트남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20 영업일 이내에 외국인계약자가 공제법에 따라 FCT 를 납부할 것임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공제법을 적용하여 FCT 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외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공제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계약자는 공제법 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방법 2 – 직접법 (Direct Method)

직접법 (또는 원천징수법)을 채택한 외국인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세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규정된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정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하는 외국인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발주처의 매입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허용됩니다.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FCT 신고 방식에 있어 별도의 요구사항이 존재합니다.

### 방법 3 – 혼합법 (Hybrid Method)

혼합법은 외국인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등록과 '공제법'에 따른 부가세 신고납부(즉,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부분은 총 매출액에 '직접법' 하의 인정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혼합법을 채택하기 위한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임
- 182 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초하여 베트남에서 영업을 수행함

- 재무부(MoF)의 지침 및 회계규정에 부합하는 회계기록을 유지 관리함

## 직접법 하 FCT 적용 세율 (FCT Rates under Direct method)

‘직접법’ 하에서 특정 경우들에 적용되는 주요 FCT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간주 부가세율(2)	간주 법인세율
베트남 내 재화 공급 또는 재화 공급시 유관서비스 제공 -베트남 내에서만 재화가 이동하는 수출-수입거래 -베트남 내 재화의 유통 -판매자가 베트남 내에서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Incoterms 형태의 재화 인도를 포함	면제 (1)	1%
용역	5%	5%
식당, 호텔 및 카지노 운영 용역	5%	10%
자재/기계장치/설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 및 설치 용역	5%	2%
자재/기계장치/설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 및 설치 용역	3%	2%
운송	3% (3)	2%
이자	면제	5%
로열티	면제 (4)	10%
증권 매매	면제	0.1%
파생상품	면제	2%
기타 활동	2%	2%

- (1) 부가세 면제 재화이거나 수입 시 수입부가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 없음
- (2)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제공되는 재화 및/또는 용역의 공급은 10%의 부가세율 적용 대상임.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거나 5%의 부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3) 국제 운송의 경우 0%의 부가세율 적용 대상임
- (4)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및 지적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포함) 의 이전은 부가세 면제 대상임. 기타 로열티는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상표권 등 일부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사례가 일부 지방국세청에서 제기된 바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 과세 (Taxing foreign e-commerce businesses)

Circular 80/2021 은 고정 사업장 없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디지털 사업 및 기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신고 체계를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은 세금 코드가 부여되며 분기별 국세청의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해당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에 직접 납세자 등록,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기관 및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베트남 고객이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납부 (현 외국인계약자세 체계와 유사)
- 베트남 고객이 개인인 경우, 은행 및 결제중개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러한 원천징수를 위해 은행 및 결제중개회사에 해당 해외 기업들의 이름 및 웹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개인 고객이 은행과 결제중개회사에서 원천징수를 수행할 수 없는 카드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과 결제중개회사에서 해외 기업에 송금된 결제 기록을 추적해서 매월 베트남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2 년 3 월 21 일, 국세청은 베트남 전자 상거래 기업을 위한 직접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위한 포털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23 년 10 월까지 등록된 외국기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사업자들의 의무를 명시하는 신규 규칙에 관한 시행령 85/2021을 발행했습니다.

##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외국인계약자세-법인세는 조세조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당국 간 상호합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합한 조세조약상 내용에 근거하여 법인세 인정세율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5%의 법인세 원천징수는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배분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세조약에 의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포함하여 약 80 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다수의 미체결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별첨 1]을 참조하십시오. 미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원장식 및 소득이전 (“BEPS”) 관련 움직임 항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조세조약의 일부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하여 많은 지침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및 조세회피 방지(Anti-avoidance) 조항들과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결된 계약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조세조약상의 조세감면/면제 만을 적용받기 위한 것(treaty shopping)이거나,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과 타방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적용은 배제됩니다. 동 지침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취인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소득을 제 **3** 국에 주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12** 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수취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무 할 경우
- 수취인이 수취한 소득과 관련하여 영향력 또는 위험이 거의 없거나 전무 할 경우
- **Back to back** 계약 (원계약과 대응하는 재하청 계약)
- 수취인이 조세조약에 명시된 투자 장려를 위한 것이 아닌 낮은 세율 (**10% 이하**)로 개인소득세 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수취인이 타방국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리인 혹은 중개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조세조약 경감 청구와 관련한 절차는 **2022년1월1일**부터 통보에서 승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세조약 청구에 대한 과세당국의 검토 및 평가 기한이 도입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필요서류 접수 후 **40일** 이내 면제/경감 대상 세액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청구 거부 사유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지분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의 지분 양도시 발생한 이득은 대부분의 경우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분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로 불리나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매각가액에서 취득가액 (최초 매각의 경우에는 최초 법정자본금 출자액)과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도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베트남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할 매각가액에서 지분양도세를 원천징수하고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수자도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지분이 매각되는 베트남 회사가 지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가격이 시장의 공정가치 수준이 아닌 경우 과세당국은 지분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분양도가격 (Transfer price)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내 기업이 보유하는 지분의 양도 뿐 아니라, 베트남 내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모회사의 베트남 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2019년 조세행정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과세 추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에 의한 증권 (채권, 베트남 내 공개된 주식회사의 주식 등) 양도의 경우 ‘전체 매각가’의 0.1%의 인정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매각자가 거주자인 베트남 내국법인일 경우 ‘매각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 20%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 적용대상 (Scope of Application)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됩니다(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 국내사업자는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됩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를 지불함과 동시에 부가세를 관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FCT (외국인계약자세)를 통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액은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된 매출부가세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에 부과된 매입부가세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매입부가세의 공제를 위해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 (“VAT Invoice”)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수입시 납부된 부가세의 적합한 증빙은 세금 납부 영수증 (Tax payment voucher)이며, FCT 를 통해 납부된 부가세의 증빙은 FCT 지급 영수증 (FCT payment voucher)입니다.

##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 (Goods or Services where VAT declaration and payment are not required)

아래 제시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련 매입부가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을 제외한 보상금, 상여금, 보조금
- 탄소배출권 판매 및 기타 금융수익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된 특정 용역 (예컨대, 운송수단, 기계장치 및 설비의 수리, 투자 및 무역거래의 판촉, 광고, 마케팅, 해외 용역 및 재화 판매를 위한 중개활동, 교육훈련용역, 특정 국제통신용역 등)
-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
- 아직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 가공만 거친 농산물의 판매
- 현물 자본 출자
- 보험회사가 제 3 자로부터 받은 보상/배상금 수령액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대금 회수만 수행할 경우 (예: A 사가 B 사로부터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은 C 사에 납부하며 이후 C 사가 B 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C 사가 B 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님)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
  - i. 우편, 통신, 복권, 항공/버스/선박/기차 티켓 등을 원공급자(본인)가 결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리인
  - ii. 0% 부가세를 적용받는 국제 운송, 항공 및 해운 용역을 위한 대리인
  - iii. 보험 대리점
- 부가세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받는 중개수수료
- 해외 구매자의 반품에 따라 수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된 재화

## 면세 재화 및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아래 열거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 특정 농산품
- 전년도 1 억 VND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수입되거나 리스한 굴착장비, 비행기 및 선박류
- 토지사용권(LUR)의 양도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나와 있음)
- 파생상품, 대출여신서비스 (신용카드발행, 금융리스업, 팩토링업 포함), 부가세 과세 대상인 담보부자산 (Mortgaged assets)의 매각(채권자 허가 하에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및 신용정보의 제공
- 펀드 운용을 포함한 다양한 증권업 관련 업무
- 지분 양도
- 외환 거래
- 채권매매업
- 특정 보험서비스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산물관련 보험 및 재보험 포함)
- 의료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용역
- 교육 및 훈련
- 신문, 잡지 및 특정 서적의 인쇄 및 출판
- 공공 버스에 의한 승객 운송 용역
- 기술 및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서비스의 이전 (소프트웨어 해외수출은 0%세율 적용대상으로 분류됨)
- 보석으로 가공되기 전 상태인 금괴 상태로 수입된 금
- 가공되지 않은 천연 자원의 수출 및 가공된 제품 중 천연 자원과 에너지의 원가상 비중이 51%를 넘는 경우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과학적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설비 및 원재료의 수입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채굴에 이용되는 설비, 기계장치, 스페어 부품 및 특수한 운송장비와 필수 재료의 수입
- 정부에서 제공하는 우편, 통신 및 공공 인터넷 서비스;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인바운드) 우편 및 통신 서비스
-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해외 원조금 등 무상공여된 국제원조로 수입된 재화 (제한조건 있음)
- 비료, 가축/가금류/해산물 및 기타 동물용 사료, 농업에만 이용되는 기계 및 설비

## 세율 (Tax Rates)



부가세에는 다음의 세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0%	동 세율은 '수출된 재화'에 적용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무관세지역 및 수출가공기업(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EPE)에 판매된 재화, 수출을 위해 가공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만 이동한 수출(in-country export, 특정 조건 있음)을 위해 가공된 재화, 면세점으로 판매된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가공기업(EPE)을 위해 제공된 건설/설치 용역, 항공·해운·국제운송 용역
5%	동 세율은 일반적으로 생필품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경제 영역에 적용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상수도, 학습자료, 서적, 미가공 식재료, 의약품 및 의료장비, 사료, 다양한 농산품 및 농업서비스, 기술/과학 용역, 고무 라텍스, 설탕 및 그 부산품,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용역/제품 및 복지 주택
10%	표준 세율로서 위에 열거된 "부가세 대상 제외", "면세", "0%", "5%"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회사의 특정 영업활동이 조세 조항에 열거된 대로 분류되기 어려울 경우,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 범주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44/2023/ND-CP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정 재화 및 용역을 대상으로 2% 부가세율 감면 (즉, 10%에서 8%로 인하)을 규정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VAT 세율 감면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 수출된 재화 및 용역 (Exported Goods and Services)

무관세지역(non-tariff area)에 소재한 회사를 포함한 해외 법인에게 판매된 재화 및 직접적으로 제공된 용역은, 베트남 밖이나 무관세 지역 내에서 소비되었다면 0%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제 운송 용역을 제외한 수출된 재화 및 용역에 0%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예: 계약서, 비현금지급증빙, 통관신고서(수출 재화의 경우))

부가세 규정상 0% 부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용역들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광고, 호텔서비스, 교육훈련, 오락, 관광안내 용역과, 무관세지역(non-tariff area)에 제공되는 다양한 용역(주택 임대, 직원들의 통근 운송, 특정 음식공급용역 등을 포함) 및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판매/유통과 관련된 용역 등이 0%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세 산출 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부가세 산출 방법에는 공제방식과 직접계산방식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방법 1

#### 공제법 (Deduction method)

이 방법은 규정에 맞게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기장을 유지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들을 보관하는 사업자 중 공제방식을 적용하기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 억 VND 이상인 사업장
- 공제방식의 부가세 신고를 자진하여 등록한 경우

- 부가세 납부세액의 산출

$$\text{부가세 납부세액} = \text{매출부가세} - \text{매입부가세}$$

- 매출부가세의 산출

매출부가세는 과세표준에 적합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 관세부과 과세가액에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해당시), 환경보호세(해당시)를 가산한 가격에 대하여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분할대금 기준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할부액 대신 이자를 제외한 총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 매입부가세의 공제

국내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부가세를 처리합니다. 수입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세금납부영수증에 기초하여 매입부가세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2 천만 VND 이상의 지급에 대한 매입부가세공제는 은행을 통한 지급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공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한 매입부가세(즉, 외국인계약자세 FCT 체계 하에서 원천징수된 부가세)도 해당 납세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의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시 지급한 매입부가세는 환급/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이나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급에 대하여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점과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부가세 면세 및 과세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활동에 사용된 매입분에 해당하는 매입부가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2 직접법 (Direct method)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됩니다:

- 부가세 과세대상 연간 매출이 10 억 VND 미만인 사업장
- 개인 및 가내사업자
- 적합한 장부 기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및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으로서 투자법 (Law on Investment)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 금, 은, 보석을 매매하는 사업자

- 부가세 납부세액의 산출

$$\text{부가세 납부세액} = \text{판매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 \times \text{부가세율}$$

금, 은, 보석의 매매에서 발생한 음(-)의 부가가치는 동 기간에 발생한 양(+)의 부가가치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음(-)의 부가가치는 동일 역년 내에 후속 기간에 이월되어 상계될 수 있으나 차년도로 이월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선택한 부가세 신고 방식은 연속된 2 년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할인 및 판매촉진 (Discounts and Promotions)

가격 할인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할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감소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 재화 및 용역 (Goods and Services for internal consumption)

내부적인 목적으로 소비된 재화와 용역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 매출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베트남에서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지점들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해 별도로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사업 활동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본사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각 지역에 해당 세금을 배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배분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조 종속 단위/사업장 위치
- 부동산 양도
- 건설 활동 (부가가치세만 해당)
- 여러 지역에 위치한 수력 발전소
- 전자 복권 사업

다른 지역에 위치한 제조 종속 단위/사업장에 할당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적용전 수익에 2% (10%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1% (5%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을 곱합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할당된 부가가치세가 본사의 납부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큰 경우 본사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기업의 총 매출(부가가치세 적용전) 대비 해당 제조 종속 단위/사업장의 매출(부가가치세 적용전)의 비율로 배분됩니다.

부가세 사업자는 익월 20 일까지 월별 부가세 신고를 수행해야 하며 분기별 납부의 경우 (전년도 연간 매출이 500 억 VND 이하인 회사의 경우 적용) 차분기 첫 번째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세 환급 (VAT Refunds)

부가세의 환급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경우들에만 가능합니다.

- 매입부가세 환급 대상액이 3 억 VND 를 초과하는 수출 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월별 혹은 분기별로 납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따라 이루어짐. 수출 매출과 관련된 매입부가세액의 경우 (VAT 환급조건 충족시) 수출 매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급 가능. 재화를 수입한 후 추가 가공 없이 바로 해외로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태의 기업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VAT 를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들 중 영업 전 투자단계이면서 누적 매입부가세 공제액이 3 억 VND 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들 또는 규정된 법정 자본금이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정 ODA 프로젝트, 외교 관련 면세 대상인 경우, 해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베트남 내 재화를 구매한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환급 대상이 아닌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미래의 매출부가세를 상계하기 위해 해당 초과분을 이월해야 할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Invoicing)

##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s)

전자세금계산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시 거래 가치에 관계없이 과세당국의 인증코드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합니다.

기업들 중 과세당국의 인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허용되는 산업들은 전기, 석유, 통신, 천연수, 금융 기관, 보험, 의료,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매매, 교통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규제대상 경제 부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인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과세당국에 직접 전송하거나 공인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포털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포털과 연결하기 위한 특정 기술적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전에 (인증코드 유/무에 관계 없이), 기업은 국세청 웹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해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불합니다. 요율의 범위는 지역, 기반시설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산업군에 따라 다양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과 아파트의 소유자는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에 대한 법률에 따라 토지세(**land tax**)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동 세금은 사전 고시된 평방미터당 가격에 기초하여 사용된 특정 토지면적에 부과되며, 0.03%에서 0.15% 범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SST”)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의 생산이나 수입,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비세입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의 과세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수입된 재화 (다양한 형태의 석유 제품 제외)의 경우 수입단계와 국내유통단계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가격 (Taxable Price)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생산자가 판매하는 경우/ 수입한 재화를 수입자가 판매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환경보호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입니다. 판매가격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가격을 추정할 것입니다. 수입된 재화의 과세가격은 통관시 과세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생산되거나 수입된 재화가 후속적으로 유통업체에 의해 제삼자가 아닌 업체에게 판매될 경우, 특정한 경우들에 있어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따라 최저 과세가격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Tax Credits)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원재료를 이용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시, 혹은 국내 생산자로부터 매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수입 및 판매 단계 모두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 단계에서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내국 판매시점에서 공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세율 (Tax Rates)

특별소비세율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다음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산품	용역 활동
담배, 술, 맥주, 24 인승 미만의 자동차, 오토바이, 비행기, 보트, 석유, 소비전력 90,000 BTU 이하의 에어컨, 카드놀이용 카드, 부적 등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도박, 복권, 골프클럽 및 베팅요소가 포함된 오락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서비스	세율 (%)
시가/담배	75
스피릿(증류주)/와인	
알코올 함유량(ABV) 20% 이상 알코올	65
함유량(ABV) 20% 미만	35
맥주	65
24 인승 미만 자동차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1%~3% 입니다)	10 – 150
배기량 125cc 초과와 오토바이	20
비행기	30
보트	30
석유	7 – 10
에어컨 (90,000 BTU 이내)	10
카드놀이용 카드	40
부적	70
디스코텍	40
마사지, 가라오케	30
카지노, 슬롯머신 등	35
베팅 요소가 포함된 오락	30
골프	20
복권	15



# 환경세 및 친환경 인센티브 (Green Taxes and Green Incentives Landscape)

## 환경세 (Green Taxes)

2020년 11월 17일, 국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법 72/2020/QH14을 공표했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지침을 설정했습니다.

환경세에는 에너지, 운송, 오염 및 자원에 대한 세금이 포함됩니다. 에너지세는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휘발유, 디젤 및 전기와 기타 난방 등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유, 천연 가스, 석탄 및 전기 등에 대한 세금입니다.

베트남에는 별도의 환경세 체계가 없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유형의 세금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환경세입니다:

번호	세금의 종류	세금의 성격	특정 과세 기준
1	특별소비세 ( <b>Special Sales Tax, “SST”</b> )	일부 특별소비세 규칙은 환경보호를 촉진하며,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율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이브리드 연료 또는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세율이 낮아지며, 전기 자동차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연료가 포함된 휘발유에는 일반 휘발유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소비세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탄소 배출 할당량	새로운 환경법을 통하여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계획의 개념 및 탄소 배출에 대한 상한선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제시했습니다. 탄소 배출 할당량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삼불화질소(NF3)를 배출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적용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업종 리스트에 있는 기업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제공된 할당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탄소할당량과 탄소상쇄를 교환,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3	<b>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NRT”)</b>	<p>천연자원세는 석유, 광물, 천연가스 및 임산물을 포함한 베트남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에 부과됩니다.</p> <p>농업, 임업, 어업, 제염업에 사용되는 자연수 및 냉각 목적의 해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천연자원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p>	<p>세율은 개발되는 천연자원에 따라 1%에서 40%까지의 범위에서 다르며 단위당 지정된 과세 가치로 생산량에 적용됩니다. 자원의 상업적 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원의 과세 가치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가능합니다.</p> <p>원유, 천연 가스 및 석탄 가스는 일일 평균 생산량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p>																		
4	<b>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es, “EPT”)</b>	<p>환경보호세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정 재화 (주로 석유, 석탄 등)의 생산과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p>	<p>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979 779 1489 1585"> <thead> <tr> <th>재화</th> <th>단위</th> <th>세율 (VND)</th> </tr> </thead> <tbody> <tr> <td>석유, 디젤, 윤활제 등</td> <td>litre/kg</td> <td>1,000 - 4,000</td> </tr> <tr> <td>석탄</td> <td>ton</td> <td>15,000 - 30,000</td> </tr> <tr> <td>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td> <td>kg</td> <td>5,000</td> </tr> <tr> <td>비닐봉지 (*)</td> <td>kg</td> <td>50,000</td> </tr> <tr> <td>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td> <td>kg</td> <td>500 - 1,000</td> </tr> </tbody> </table> <p>*포장에 사용되거나, 환경친화적 (Environmentally friendly)인 소재인 경우 제외</p>	재화	단위	세율 (VND)	석유, 디젤, 윤활제 등	litre/kg	1,000 - 4,000	석탄	ton	15,000 - 30,000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	kg	5,000	비닐봉지 (*)	kg	50,000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	kg	500 - 1,000
재화	단위	세율 (VND)																			
석유, 디젤, 윤활제 등	litre/kg	1,000 - 4,000																			
석탄	ton	15,000 - 30,000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s)	kg	5,000																			
비닐봉지 (*)	kg	50,000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	kg	500 - 1,000																			

위에서 언급한 세금 외에도 기업은 해당 분야 및 활동에 따라, 환경보호 비용이 부과되거나 환경보호 기금 납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기부,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환경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인센티브 (Green Incentives)

친환경 인센티브는 환경피해를 줄이는 프로젝트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금전적 혜택이며 이에 환경보조금 및 세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 관련 범위 내 프로젝트에는 토지 관련 혜택과 같은 다른 인센티브 제도가 부여됩니다. (예: 토지 할당 우선 순위, 토지 임대료 감소; 낮은 이자율; 환경 보호세 및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환경친화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보조금 등).

#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 수입관세 (Import duties)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관세가 적용됩니다. 수입 관세는 종가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수입 물품의 과세 금액에 해당 수입 관세율을 곱합니다.

수입관세는 다음 3 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Preferential rates), 특별우대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우대관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most-favoured-nation, “MFN”, 또는 normal trade relations)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MFN 세율은 베트남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조항에 따르며,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특별우대관세율은 베트남과 특별우대 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현재 베트남이 당사국으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ASEAN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홍콩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인도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호주-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
- ASEAN 회원국과 호주, 중국, 일본,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 (RCEP)
- 베트남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유럽 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EVFTA)
-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베트남과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관세동맹)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 (VIFTA)
- CPTPP 협정 또는 일본 TPP-11 (즉,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베트남 간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 베트남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TPP-11 (즉,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베트남 간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간 자유무역협정
- 베트남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 (UKVFTA)

추가적으로, 유럽 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베트남,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 아랍 에미리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세안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이 2021년 11월부터 협상 중에 있습니다.

특별우대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입되는 재화에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우대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율 (MFN 관세율에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입품에는 일반적으로 5% 또는 10% 세율의 수입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에 10%의 VAT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가 8%의 세율로 감면받았습니다. 해당 감면 세율은 다음 재화의 유형을 제외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특정 광산물, 코크스 (“coke”), 정제석유, 화학제품; 또한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

## 관세액 산정 (Customs valuation)

원칙적으로 베트남은 몇가지 예외를 두고 WTO의 관세평가협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입된 재화의 관세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치(즉, 수입된 재화에 대해 지급된/지급될 대가로서 관세 부과대상 요소에 따라 조정)를 기초로 책정됩니다. 거래가치가 적용될 수 없을 경우, 대체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관세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 면세 (Exemptions)

수입관세의 면제는 당해 프로젝트가 장려되는 분야/지역으로 분류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수입된 재화에 적용되며, 다음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장려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기계, 장비, 특정 용도의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
- 석유와 가스 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기계, 장비, 특정 운송수단, 자재, 사무용품으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
- 수출된 재화의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 소모품, 부품
- 수출품의 가공을 위해 수입한 자재, 소모품, 부품
- 국내 시장으로 수입될 때, 수입된 원재료나 부품의 사용 없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및 조립된 재화
- 특정 장려되는 프로젝트의 생산에 투입되기 위해 수입된 자재, 소모품, 부품으로서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
- 워런티,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수출된 재화

## 환급 (Refunds)

수입 관세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수입관세가 지급이 되었지만 실제 물리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은 재화
- 사용되지 않고 재수출되어야 하는 수입 재화
- 국내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지만,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재화

## 수출관세 (Export Duties)

수출 관세는 일부 항목에만 부과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래, 석회석, 대리석, 화강암, 철광석, 원유, 임산물 및 고철 등을 포함한 천연자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율은 최소 0%에서 최대 40%까지 적용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국경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대로 해외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선적지 항구의 판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거래가치방법을 사용하여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당국이 사용하는 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관세가격이 산정되게 됩니다. 관세당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사한 수출품의 거래가격, 특정한 조정을 반영한 유사 재화의 국내시장 판매가격, 또는 해당 수출품에 대해 관세당국이 수집, 분류 및 조정한 판매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 수입시 부과 가능한 기타 세금 (Other taxes potentially imposed on imports)

수입관세, 수입부가가치세에 외에도 수입된 재화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세금이 존재합니다. 기타 세금에는 일부 소수 재화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반덤핑관세 (anti-dumping tax), 세이프가드 관세 (safeguard tax) 및 상계관세 (anti-subsidy) 등이 포함됩니다.

## 관세조사 (Customs audits)

관세당국은 사후 관세조사를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HS 코드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수출 물품을 가공 또는 제조하기 위해 수입된 면세 자재에 대한 세관 결산 보고서입니다.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 거주지국 (Tax Residency)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과세 연도 1 년 동안 183 일 이상을 베트남에 체재한 경우, 또는
-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영구/임시 거주증에 기재된 등록된 주거지 또는 한 과세연도 동안 183 일 이상의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타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거주자는 전세계(베트남 내외)의 모든 과세가능 소득에 대하여 (어디에서 지급하고 수령했는지를 불문하고) 베트남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거주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거주자는 베트남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20%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비근로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단, 비거주자의 과세여부는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과세 연도 (Tax Year)

베트남의 과세연도는 1 역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첫 입국일로부터 연말까지 베트남 체류가 183 일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 첫해에 한하여) 개인의 과세연도는 입국일로부터 첫 12 개월 기간이며, 이후 부터 과세 연도는 1 역년 기준이 됩니다.

##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금전적 급여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출장경비지급
- 통신료 지급 및 사무용품비
- 근무복(유니폼) 지급, 현금으로 지급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시간외근무수당 중 할증수당 지급액
- 1 회성 거주이전비 지원 :
  - 베트남 근로자가 해외 근로를 위해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주할 때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할 때
  -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베트남으로 귀국할 때
- 출퇴근 비용 지원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매년 1 회 본국 출입국 항공료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 자녀의 베트남 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자의 외국 소재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
- 직원교육훈련비
- 중식대현물지급비(현금 보상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예컨대, 시설회원권 사용료, 단체의료보험)
- 석유 및 자원 채굴 등 특정 산업에서 교대근무식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항공료
- 누적된 납입금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국내/해외 특정 임의보험계약에 대한 회사부담분 (예: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 결혼식, 장례식 부조금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상기 비과세를 적용하는 데는 충족하여야 할 여러 가지 조건 및 제약이 존재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개인소득 (Non-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 외의 과세되는 개인소득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 사업소득 (연간 1 억 VND 를 초과하는 임대 소득 포함)
- 투자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유가증권(주식)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1 천만 VND 를 초과하는 상속 소득
- 1 천만 VND 를 초과하는 상금/상품 (카지노에서 발생한 소득 제외)
- 1 천만 VND 를 초과하는 저작권/프랜차이즈/로열티의 이전 및 선물 수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 비과세 개인소득 (Non Taxable Income)

비과세 개인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 보험 증권으로부터 수취한 보험 보상소득
- 사회보험법률(또는 해외의 동등한 규정) 하에서 수령한 퇴직연금
- 친족간에 양도한 부동산에서 기인한 소득
- 친족간에 수령한 상속소득/증여소득
-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 퇴직연금
- 해외 국적 선박이나 베트남 국적 국제 운항 회사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선원들의 소득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해외 개인소득이 있는 베트남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해외법상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Tax Deductions)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 필수 보장 보험인 사회, 건강 및 실업보험 종업원 부담액
2. 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계약에 대한 납입액 (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에 한함)
3. 특정 허가된 자선단체에 대한 종업원 기여금



#### 4. 각종 공제:

- 인적공제 : 월 11 백만 VND
- 부양가족 공제 : 월 4.4 백만 VND/인, 부양가족공제는 자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는 적절한 공제대상 부양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율 (PIT Rates)

#### 거주자 - 근로소득

연간 과세가능 소득 (million VND)	월간 과세가능 소득 (million VND)	세율
0 – 60	0 – 5	5%
60 – 120	5 – 10	10%
120 – 216	10 – 18	15%
216 – 384	18 – 32	20%
384 – 624	32 – 52	25%
624 – 960	52 – 80	30%
More than 960	More than 80	35%

#### 거주자 - 기타소득

과세가능소득 종류	세율
사업소득	0.5% - 5% (사업소득 업종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이자(은행이자 제외) / 배당	5%
유가증권(주식)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순이익의 20%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저작권 소득	5%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5%
상금 소득	10%
상속 / 증여 소득	10%

## 비거주자

과세가능소득 종류	세율
근로소득	20%
사업소득	1% - 5% (사업소득 업종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이자(은행이자 제외) / 배당	5%
유가증권(주식) / 유한회사 지분의 양도	매각대금의 0.1%
부동산의 양도	매각대금의 2%
저작권 수익	5%
프랜차이즈 / 로열티 소득	5%
상금 소득	10%
상속 / 증여 소득	10%

## 신고 및 납부 (Administration)

### 개인소득세 신고코드 (Tax codes)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개인들은 각각의 신고 코드(tax code)가 있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신고 코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직원이 등록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후속적으로 동 파일을 지역세무서에 제출), 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 보유 개인들은 각자의 거주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 소득세 신고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및 납부 (Tax declarations and payment)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별 신고의 경우는 근로소득 수령일 익월 20 일까지, 분기 신고의 경우는 보고대상 분기의 익월 말일 까지 신고납부를 수행해야 하며, 연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의 년기준 납부액을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고용자가 진행할 경우 과세연도의 말일에서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 개인이 진행할 경우 과세연도 말일에서 네 번째 달의 말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베트남 파견이 종료된 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근로소득 최종 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소득세가 성실히 납부/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간 납부된 내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말 정산시 기존에 과다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신고코드(tax code)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 회사는 외국 계약자의 근로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해당 개인들이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7 일 이전에 지역 과세당국에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정보 (이름, 소득 정보, 여권 번호 등을 포함)를 제공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각자 과세대상 비근로소득 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규정은 수령 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을 수령한 시점에 비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신고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한 임대소득은 제외).

### 개인 사업자에 대한 지불 관련 원천징수 의무

기업은 납세자로 간주되는 가족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상여금, 현금 및 비현금 지원, 프로모션, 거래할인, 결제할인 및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서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s)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의 보험료 납부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HI")의 보험료 납부는 베트남에서 체결한 3 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SI")의 보험료 납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베트남 근로자 및 노동허가서를 소지하고, 무기한 또는 1 년 이상의 베트남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 그룹 내에서 내부적으로 파견된 (예: 본사 근무 후 베트남 파견) 특정한 외국인 근로자와 법정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의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I/HI/UI 보험료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SI	HI	UI	Total
근로자	8%	1.5%	1%	10.5%
회사	17.5%	3%	1%	21.5%

SI/HI/UI의 보험료 납부액 책정에 적용되는 소득은 급여, 특정 수당, 기타 정기적 지급액으로 하되, SI/HI 납부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20배를, UI 납부액에 대해서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20배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며 매년 재검토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회사의 보험료 납부액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서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SI/HI/UI 보험료 납부액은 근로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공제 사항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자발적인 연금상품 계약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개인소득세에서, 회사 부담분은 법인세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 기타세금 (Other Taxes)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기타 공과금 및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예로는 사업허가세(Business licence tax), 등록 가능한 자산의 이전시 발생하는 등록세(인지세와 유사) 등이 있습니다.

# 세무조사, 항소 및 소송 (Tax Audits, Appeals and Litigation)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수년의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앞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세무조사의 시기와 대상범위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세법 위반(tax offences)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행정벌로서의 가산세부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다양한 배수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가산세까지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의하여 적발된 (예: 세무조사 등) 차이에 대하여, 과소 신고된 세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 0.03%의 연체이자(지연납부이자)가 부과됩니다.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10 년이며 가산세에 대해서는 5 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제척기간 적용 없이 언제나 해당 세금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세불복 절차(2 단계로 구성될 수 있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납세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개시 할 수 있는 시한은 각 절차별로 상이합니다.

#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 회계 체계 (Accounting framework)

### 베트남 회계기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재무부는 26 개의 베트남 회계기준을 발표하였으며, 각각 관련 국제회계기준(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을 기반으로 하되 베트남의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비교하여, 금융상품, 비유동자산손상, 공정가치와 관련된 회계기준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회계법 및 실무적용지침 (Accounting Law and applicable implementation guidance)

베트남에서는 '회계법(Accounting law)'이 국회에서 발행한 가장 상위의 회계 규정입니다. 회계 이슈들은 다양한 결정문(decisions), 시행령(decrees), 시행규칙(circulars), 공문(official letters), 그리고 베트남 회계기준 (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추가적으로 규정됩니다.

베트남 회계 체계는 베트남 회계 시스템, 베트남 회계 기준 및 회계에 적용되는 다양한 지침 (집합적으로 "VAS"라고 함)으로 구성됩니다. 베트남 회계 시스템은 회계 실무에서 참조되는 일반적인 회계 규정으로, 표준 계정, 재무제표 양식, 회계 장부 및 증빙문서 양식은 물론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 복식 부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회계 시스템은 주로 원칙 중심 (principles-based)이라기 보다는 규칙 중심 (rules-based) 입니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펀드매니저 및 투자 기금에 대한 산업별 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 지침은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며, 다른 지침은 재무부에서 발행합니다.

###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 기준 : 베트남 회계 체계 (Vietnamese Accounting System), 베트남 회계 기준 및 적용 가능한 규정
- 언어 : 회계기록은 베트남어로 구비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와 결합되어 구비될 수 있습니다.
- 회계기간 : 한 회계연도는 12 개월입니다. 신설 기업의 최초 회계기간은 사업자등록증(ERC)일자로부터 15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사하게, 최종 회계기간의 경우에도 15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통화 : 회계에 사용되는 통화는 베트남 동 (VND)입니다. 주로 외화로 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하는 기업은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외화를 기준으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재무보고의 경우, 다른 통화를 회계통화로 사용하는 회사는 해당 외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특정 규정에 따라 VND 로 변환해야 합니다.

- 회계 문서화 : 회계 문서는 문서 또는 전자 파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법인은 보관 목적으로 기록을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당국이 검사, 조사, 모니터링 및 감사를 위해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 회계서류를 인쇄하여 법정 대표자와 회계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 인감 : 기업은 공식적인 인감의 형태, 수량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장의 관리, 사용 및 보관에 있어서 기업은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관 : 기업의 관리 또는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의 경우 5년 / 회계장부를 기록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재무제표, 회계장부 및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문서의 경우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회계 기록의 미비는 VAS 미준수로 평가되는 근거가 됩니다. 과세당국은 VAS 미준수를 법인세 인센티브의 철회, 비용의 손금불인정, 매입부가세 공제/환급 거부를 포함한 세액 재산정 및 가산세 부과와 같은 근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무 보고 (Financial reporting)

VAS 하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의 변동내역 공시를 포함한 주석

각 기업은 회계법 및 관련 규정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장(chief accountant)을 임명해야 합니다. 연차 재무제표는 회계장 및 법정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무제표 사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역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장기업 및 공기업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 (Moving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무부가 중점을 둔 영역 중 하나는 베트남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16일에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국제회계기준 적용 계획을 승인하는 Decision No. 345/QD-BTC 를 발표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은 3 단계로 구성됩니다.

<b>1 단계</b>	국제회계기준 준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무부는 2022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준비에는 IFRS의 베트남어본 출판, 교육, IFRS 도입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b>2 단계</b>	국제회계기준 시범 도입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영 그룹의 모회사, 그룹 내 모기업인 상장 기업, 대규모 비상장 공공 기업 및 기타 모회사를 포함하여 IFRS 도입 필요성과 도입자원이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자발적 도입을 재무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FDI 기업은 국가 예산 납부를 위해 관할당국에 납세에 대해 요구되는 모든 관련 정보와 투명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개별 재무제표에 IFRS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b>3 단계</b>	국제회계기준 의무 이행 (2025년부터): 모든 국영기업, 상장기업 및 대규모 비상장 공공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IFRS를 의무적용해야 합니다.



모회사로 운영하는 기타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자발적으로 IFRS 도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 국가 예산에 기여하기 위해 관할당국에 요구된 모든 정보와 투명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개별 재무제표에 IFRS 도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재무보고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과 같은 이점을 기업에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재무 정보를 더 용이하게 제공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 도모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무부의 공식 발표가 없었으나 결정문 345/QD-BTC 하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이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계법 및 기업회계시스템 개정 예상

재무부는 현재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를 수용하기 위해 베트남 회계법 개정, 특히 전자 환경에 적합한 추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또한 현행 기업회계시스템에 대한 시행규칙 200/2014/TT-BTC (“Cir 200”)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초안은 국제회계기준과의 격차를 줄이며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적응하기 위해 Cir 200의 다양한 조항을 수정하여 보충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개발, 특히 베트남 시장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험, 은행, 증권 등 특정업종의 회계시스템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회계감사 요구사항 (Audit requirement)

재무부는 국제감사기준 (“ISA”)을 기초로 47개의 베트남감사기준 (“VSA”)을 발행했으며, 이는 발행일자 시점의 “ISA”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집니다. 계속해서, 재무부는 새로운 VSA를 초안 작성하여 발행하거나 기존 VSA를 현재 ISA와 대응되도록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트남은 투자완료감사에 대한 VSA No. 1000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다음의 기업들은 연차 재무제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구,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중개회사,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지점
- 공기업, 증권 거래 및 발행 기관, 상장회사, 증권 거래 및 발행 기관, 상장회사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 국영기업,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 및 국가예산으로 Group A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감사받은 연차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은 업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검토받은 중간 재무제표는 회계연도의 최초 6 개월의 종료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관련 인허가 당국, 재무부(MoF), 지방 세무서, 통계청 및 기타 관련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의 30 일 이전에 독립적인 회계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계감사인 교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3 년 연속으로 특정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공인회계사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명 공인회계사 교체 규정 외에도, 공기업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들은 4 년의 연속 감사 수행 후 교체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5 년 연속 감사 수행 후 '회계법인'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 내부감사 (Internal audit)

Decree No. 05/2019/ND-CP 는 내부감사 기능의 설립 및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합니다. 동 시행령의 목적은 베트남에 있는 기업이 내부감사에 대한 선도적인 관행과 접근방식, 방법론을 채택하도록 하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투명성, 진실성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PwC는 기업이 본 시행령을 깊이 이해하도록 HOSE와 협력하여 베트남에서 효과적인 내부감사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자주 문의되는 질문 (FAQs)을 도출하고 이를 2020년 3월에 배포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5일, 재무부는 또한 202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베트남 내부감사기준 및 내부감사에 대한 직업윤리 원칙에 관한 시행규칙 8/2021/TT-BTC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은 요구되는 직업윤리 외에도, 내부감사의 운영방법과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원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별첨 1 – 조세조약 (Appendix I - Double taxation agreements)

베트남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EPS)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협약 관련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다자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조세협약들은 일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각 국가간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주요 원천징수세율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No	체결국	이자 (%)	로열티 (%)	주석참고
1	Algeria	15	15	1, 2
2	Australia	10	10	-
3	Austria	10	7.5/10	2
4	Azerbaijan	10	10	2
5	Bangladesh	15	15	2
6	Belarus	10	15	2
7	Belgium	10	5/10/15	2
8	Brunei Darussalam	10	10	2
9	Bulgaria	10	15	2
10	Cambodia	10	10	2
11	Canada	10	7.5/10	2
12	China	10	10	2
13	Croatia	10	10	-
14	Cuba	10	10	-
15	Czech Republic	10	10	2
16	Denmark	10	5/15	2
17	Egypt	15	15	1
18	Estonia	10	7.5/10	-
19	Finland	10	10	2
20	France	Nil	10	-
21	Germany	10	7.5/10	2
22	Hong Kong	10	7/10	2
23	Hungary	10	10	-
24	Iceland	10	10	2
25	India	10	10	2
26	Indonesia	15	15	2
27	Iran	10	10	2
28	Ireland	10	5/10/15	2
29	Israel	10	5/7.5/15	2
30	Italy	10	7.5/10	2
31	Japan	10	10	2
32	Kazakhstan	10	10	2

No	체결국	이자 (%)	로열티 (%)	주석참고
33	Korea (South)	10	5/15	2
34	Korea (North)	10	10	2
35	Kuwait	15	20	1, 2
36	Laos	10	10	-
37	Latvia	10	7.5/10	2
38	Luxembourg	10	10	-
39	Macau	10	10	2
40	Macedonia	10	10	1
41	Malaysia	10	10	2
42	Malta	10	5/10/15	2
43	Mongolia	10	10	2
44	Morocco	10	10	2
45	Mozambique	10	10	-
46	Myanmar	10	10	2
47	Netherlands	10	5/10/15	2
48	New Zealand	10	10	-
49	Norway	10	10	2
50	Oman	10	10	2
51	Pakistan	15	15	2
52	Palestine	10	10	-
53	Panama	10	10	-
54	Portugal	10	7.5/10	2
55	Philippines	15	15	2
56	Poland	10	10/15	-
57	Qatar	10	5/10	2
58	Romania	10	15	2
59	Russia	10	15	-
60	San Marino	10/15	10/15	-
61	Saudi Arabia	10	7.5/10	2
62	Serbia	10	10	2
63	Seychelles	10	10	-
64	Singapore	10	5/10	2
65	Slovakia	10	5/10/15	2
66	Spain	10	10	2
67	Sri Lanka	10	15	2
68	Sweden	10	5/15	2
69	Switzerland	10	10	-
70	Taiwan	10	15	-
71	Thailand	10/15	15	2
72	Tunisia	10	10	2
73	Turkey	10	10	2

No	체결국	이자 (%)	로열티 (%)	주석참고
74	UAE	10	10	2
75	Ukraine	10	10	2
76	United Kingdom	10	10	2
77	United States	10	5/10	1, 2
78	Uruguay	10	10	-
79	Uzbekistan	10	15	2
80	Venezuela	10	10	2

(자료 : 베트남 국세청)

**Notes:**

1. 아직 발효되지 않음 (Not in force yet)
2. 특정 정부기관에서 비롯된 이자수익은 원천세 대상에서 제외됨.  
대부분의 경우 조세조약에서 설정된 한도는 현재 적용되는 국내법상 세율보다 높으며, 따라서 낮은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베트남의 현재 조세불복 해결 체계는 항소 절차, 법적 절차 및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은 납세자에게 베트남 및 기타 체결국에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 PwC Vietnam 이 제공 중인 서비스 (PwC Services in Vietnam)

PwC 베트남은 하노이와 호치민에 1994년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약 1,500명의 베트남 직원 및 파견 직원들은 베트남의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해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투자, 법률, 세무, 회계 및 컨설팅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wC 베트남은 주요 부처, 금융기관, 국영기업, 개인기업, 상업기구 및 ODA 관계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PwC 베트남은 베트남에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허가를 득한 법무법인을 2000년에 설립하였습니다. 본점은 호치민에 있으며 하노이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wC 베트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 및 자문 서비스 (Tax & Consultancy Services) :

- 컨설팅 및 각종 세무신고 (Consulting and Compliance)
- 세무진단 서비스 (Tax health check services)
- 세무 분쟁 해결 (Tax dispute resolution)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 세무실사 및 세무 구조화 (Tax due diligence and structuring)
- 급여업무 아웃소싱 (Payroll outsourcing)
- 기술적 세무 솔루션 지원 (Tax technology solutions)
- 기장 서비스 (Bookkeeping services)

## 관세 및 국제통상자문 서비스 (Customs and International Trade Advisory Services) :

- 컨설팅 및 각종 관세신고 (Consulting and compliance)
- 관세진단 서비스 (Customs health services)
- 관세 분쟁 해결 (Customs dispute resolution)
- 기술적 관세 솔루션 지원 (Customs technology solutions)

##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법률 자회사인 PwC Legal (Vietnam) Co., Ltd 를 통해 제공) :

- 시장 진입 (Market entry)
- 일반 기업 및 상사 관련 자문서비스 (General corporate and commercial services)
- 인수합병 (Mergers & Acquisition)
- 부동산 (Real estate)
-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transfer)
- 고용 및 인적자원 (Employment & human resources)
- 은행 및 금융 서비스 (Banking & financial services)
- 데이터 보안 서비스 (Data protection and privacy services)

### 딜 서비스 (Deal Services) :

- 거래 자문 (Transactions Services)
- 기업금융 (Corporate Finance)
- 기업가치평가 (Valuation)
- 딜 전략 (Deals Service)
- 대규모 자본 프로젝트 및 인프라스트럭처 (Capital Projects and Infrastructure)
- 사업구조조정 (Business Restructuring Services)
- 운전자본 관리 (Working Capital Management)

### 컨설팅 서비스 (Consulting Services) :

- 전략 (Strategy)
- 비용 및 성과 관리 자문 (Cost and Performance Management)
- 리스크 및 거버넌스 (Risk and Governance)
- 포렌직 서비스 (Forensic Services)
- 정보 기술 자문 (Information Technology)
- 인사 및 조직 (People and Organisation)
- 운영 및 공급망 관리 (Operation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 재무 기능 효율성 (Finance Function Effectiveness)
- बैंकिंग (Banking)
- 데이터 분석 (Data Analytic)

### 인증업무 (Assurance Services) :

- 재무제표 감사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 재무정보 검토 (Review of Financial Information)
- 맞춤형 업무 절차 수행 (Custom Business Procedures)
- 리스크 인증 (Risk Assurance)
- 내부감사 서비스 (Internal Audit Service)
- 내부통제 자문 (Business controls advisory)
- IT 리스크 인증 (IT Risks Assurance)
- 성과 인증 (Performance Assurance)
- 사업탄성 (Business Resilience)
- 기업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보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Reporting)
- 자본시장 서비스 (Capital Market Services)

### 특정 기업그룹 전담팀 (Country Desk Services)

- Japanese Business Services (일본기업 전담팀)
- Chinese and Taiwanese Business Services (중국/대만기업 전담팀)
- Korean Business Services (한국기업 전담팀)
- Private Business Services (민간기업 전담팀)

# PwC Vietnam Korean Business Services

## 담당자 연락처 안내 (KBS Contacts)

호치민 Office : 박준형 한국공인회계사

전화: +84 28 3823 0796 (내선) 4611 | 휴대폰: +84 (0) 76 870 4119

E-mail: [park.junhyung@pwc.com](mailto:park.junhyung@pwc.com)

PwC (Vietnam) Limited

8th Floor, Saigon Tower, 29 Le Duan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하노이 Office : 우정균 한국공인회계사

전화: +84 24 3946 2246 | 휴대폰: +84 (0) 90 324 0069

E-mail: [jung.kyun.woo@pwc.com](mailto:jung.kyun.woo@pwc.com)

PwC (Vietnam) Limited

16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Pham Hung Road, Nam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 PwC Vietnam 담당자 연락처 안내 (Contacts)

(필요하신 업무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o Chi Minh City office	Hanoi office
<b>Tax Services</b>	
Mr. Nguyen Thanh Trung <a href="mailto:nguyen.thanh.trung@pwc.com">nguyen.thanh.trung@pwc.com</a>	Ms. Dinh Thi Quynh Van <a href="mailto:dinh.quynh.van@pwc.com">dinh.quynh.van@pwc.com</a>
Mr. Richard Irwin <a href="mailto:r.j.irwin@pwc.com">r.j.irwin@pwc.com</a>	Ms. Nguyen Huong Giang <a href="mailto:n.huong.giang@pwc.com">n.huong.giang@pwc.com</a>
Ms. Giang Bao Chau <a href="mailto:giang.bao.chau@pwc.com">giang.bao.chau@pwc.com</a>	Ms. Nghiem Hoang Lan <a href="mailto:nghiem.hoang.lan@pwc.com">nghiem.hoang.lan@pwc.com</a>
<b>Bookkeeping Services</b>	
Mr. Nguyen Thanh Trung <a href="mailto:nguyen.thanh.trung@pwc.com">nguyen.thanh.trung@pwc.com</a>	Ms. Nghiem Hoang Lan <a href="mailto:nghiem.hoang.lan@pwc.com">nghiem.hoang.lan@pwc.com</a>
Ms. Ngo Thi Nhat Giao <a href="mailto:ngo.t.nhat.giao@pwc.com">ngo.t.nhat.giao@pwc.com</a>	Ms. Pham Thi Phuong Nhung <a href="mailto:pham.thi.phuong.nhung@pwc.com">pham.thi.phuong.nhung@pwc.com</a>
<b>Transfer Pricing Services</b>	
Ms. Judith Henry <a href="mailto:judith.henry@pwc.com">judith.henry@pwc.com</a>	Ms. Dinh Thi Quynh Van <a href="mailto:dinh.quynh.van@pwc.com">dinh.quynh.van@pwc.com</a>
Mr. Nguyen Le Nhan Hoa <a href="mailto:nguyen.le.nhan.hoa@pwc.com">nguyen.le.nhan.hoa@pwc.com</a>	Mr. Ngo Thanh Tin <a href="mailto:ngo.thanh.tin@pwc.com">ngo.thanh.tin@pwc.com</a>
Mr. Ngo Thanh Tin <a href="mailto:ngo.thanh.tin@pwc.com">ngo.thanh.tin@pwc.com</a>	
<b>Customs Services</b>	
Ms. Nguyen Huong Giang <a href="mailto:n.huong.giang@pwc.com">n.huong.giang@pwc.com</a>	Ms. Nguyen Huong Giang <a href="mailto:n.huong.giang@pwc.com">n.huong.giang@pwc.com</a>
Mr. Pham Van Vinh <a href="mailto:pham.van.vinh@pwc.com">pham.van.vinh@pwc.com</a>	Mr. Tong Phuoc Hoang Long <a href="mailto:tong.phuoc.hoang.long@pwc.com">tong.phuoc.hoang.long@pwc.com</a>
Ms. Nguyen Thu Ha <a href="mailto:nguyen.thu.ha@pwc.com">nguyen.thu.ha@pwc.com</a>	
<b>Tax Technology Services</b>	
Ms. Nghiem Hoang Lan <a href="mailto:nghiem.hoang.lan@pwc.com">nghiem.hoang.lan@pwc.com</a>	Ms. Nghiem Hoang Lan <a href="mailto:nghiem.hoang.lan@pwc.com">nghiem.hoang.lan@pwc.com</a>

## Legal Services

Ms. Phan Thi Thuy Duong  
[phan.thi.thuy.duong@pwc.com](mailto:phan.thi.thuy.duong@pwc.com)

Ms. Phan Thi Thuy Duong  
[phan.thi.thuy.duong@pwc.com](mailto:phan.thi.thuy.duong@pwc.com)

## Payroll Services

Mr. Nguyen Thanh Trung  
[nguyen.thanh.trung@pwc.com](mailto:nguyen.thanh.trung@pwc.com)

Ms. Nghiem Hoang Lan  
[nghiem.hoang.lan@pwc.com](mailto:nghiem.hoang.lan@pwc.com)

Ms. Vong Dong Le  
[vong.dong.le@pwc.com](mailto:vong.dong.le@pwc.com)

Ms. Vong Dong Le  
[vong.dong.le@pwc.com](mailto:vong.dong.le@pwc.com)

## Japanese Business (ジャパンビジネス)

Ms. Nguyen Huong Giang  
[n.huong.giang@pwc.com](mailto:n.huong.giang@pwc.com)

Ms. Nguyen Huong Giang  
[n.huong.giang@pwc.com](mailto:n.huong.giang@pwc.com)

Mr. Shimpei Imai  
[shimpei.imai@pwc.com](mailto:shimpei.imai@pwc.com)

Mr. Shimpei Imai  
[shimpei.imai@pwc.com](mailto:shimpei.imai@pwc.com)

Mr. Hiroyuki Tsukamoto  
[hiroyuki.tsukamoto@pwc.com](mailto:hiroyuki.tsukamoto@pwc.com)

Mr. Hiroyuki Kogure  
[kogure.hiroyuki@pwc.com](mailto:kogure.hiroyuki@pwc.com)

Ms. Yuri Sugimoto  
[sugimoto.yuri@pwc.com](mailto:sugimoto.yuri@pwc.com)

## Korean Business (한국 비즈니스 서비스)

Mr. Park Junhyung  
[park.junhyung@pwc.com](mailto:park.junhyung@pwc.com)

Mr. Jung Kyun Woo  
[jung.kyun.woo@pwc.com](mailto:jung.kyun.woo@pwc.com)

Mr. Ahn Hyo-Jae (Deals Services)  
[ahn.hyo-jae@pwc.com](mailto:ahn.hyo-jae@pwc.com)

## Chinese and Taiwanese Business (大中華區及台灣業務聯絡人)

Mr. Allan Toh  
[allan.t.toh@pwc.com](mailto:allan.t.toh@pwc.com)

Ms. Nguyen Huong Giang  
[n.huong.giang@pwc.com](mailto:n.huong.giang@pwc.com)

Mr. Jerry Chen  
[jerry.chen@pwc.com](mailto:jerry.chen@pwc.com)

Ms. Lou Jingjing (Christine)  
[lou.jingjing@pwc.com](mailto:lou.jingjing@pwc.com)

Ms. Lou Jingjing (Christine)  
[lou.jingjing@pwc.com](mailto:lou.jingjing@pwc.com)

Ms. Nguyen Ngoc Quynh  
[nguyen.n.quynh@pwc.com](mailto:nguyen.n.quynh@pwc.com)

Mr. Hsu Tzu-Hsuan (Dylan)  
[hsu.dylan@pwc.com](mailto:hsu.dylan@pwc.com)

Mr. Hsu Tzu-Hsuan (Dylan)  
[hsu.dylan@pwc.com](mailto:hsu.dylan@pwc.com)

Ms. Hua Le Minh  
[hua.le.minh@pwc.com](mailto:hua.le.minh@pwc.com)



저희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을 및 세제 변경에 대한 뉴스레터를 메일로 수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QR 코드를 스캔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 안내

## 하노이:

Floor 16, Keangnam Hanoi Landmark 72  
Pham Hung Road, Nam Tu Liem District, Hanoi  
**Tel:** +84 24 3946 2246

## 호치민:

Floor 8, Saigon Tower  
29 Le Duan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Tel:** +84 28 3823 0796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At PwC Vietnam, our purpose is to build trust in society and solve important problems. We're a member of the PwC network of firms in 151 countries with nearly 360,000 people who are committed to delivering quality in assurance, advisory, tax and legal services. Find out more and tell us what matters to you by visiting us at [www.pwc.com/vn](http://www.pwc.com/vn).

©2024 PwC Tax and Advisory (Vietnam) Company Limited.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Vietnam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